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의안번호	28
------	----

제출일자 : 1998. 8. 22.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인력 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 하고자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행정기구중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 등을 통합하고 이에 알맞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총정원을 686명에서 601명으로 85명 감함
- 현행 정원관리 기관별로 규정되어 있는 정원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만 규정하여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부여

현 행 (686명)	수 정 (60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본 청 : 215명 · 의회사무기구 : 16명 · 직속기관 : 132명 · 사 업 소 : 41명 · 읍 면 : 28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기관의 정원 : 589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 총 계 : 601명

■ 개정근거

- 경남도 행정12200 - 10406('98. 6. 22)호에 의한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 21조 제1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거창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8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
- 총 계 : 601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정원의 총수) 거창군의 <u>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u>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본청 : <u>215명</u> 2. 의회사무기구 : <u>16명</u> 3. 직속기관 : <u>132명</u> 4. 사업소 : 41명 5. 읍 면 : <u>282명</u> 	<p>제2조(정원의 총수)거창군의 <u>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u>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집행기관의 정원 : 589명</u> 2. <u>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u> <p style="text-align: center;"><u>총 계 : 601명</u></p>